



“FMD,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



# 대한한돈협회

우편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 Fax581-9769 정책기획부

문서번호 한돈협기 제710-5호  
 시행일자 2024. 1. 25.  
 수신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 제 목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안내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에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3. 오는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추진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1. 1. 26.)⇒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2.1.27.)⇒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 24. 1. 27.)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
- (주요내용)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1부

2. 가축사육시설 예방기준 및 대책(고용노동부) 1부. 끝.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